

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3236-1 |
|----------|--------|

제안연월일 : 2026년 3월 17일
제안자 : 정병용 의원

1. 수정이유

-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범죄예방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나,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 관련 상위법령의 시행시기 및 지원 근거의 명확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, 범죄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근거만을 안 제7조에 반영하도록 조정하고, 조례의 시행 시기도 관련 상위법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조례 내용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 제7조제1항제8호
 -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 →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부칙
 - 시행일을 “2026년 7월 1일”로 수정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조례 제 호

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『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개정안 | 수정안 |
|--|--|--|
| <p>제7조(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)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7조(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사업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제7조(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8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